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목 차>

- 1.국제물류진흥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
- 2.국제물류진흥지역 실증 특례 방법 및 절차
- 3.국제물류진흥지역 임시허가
- 4.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 5.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권채훈
	담당부서 (과)	물류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심지영		연락처	044-201-3998
	과장	손덕환		이메일	in25090025@mail.go.kr

2026. 06. 3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심지영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								
	2.규제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위임법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06~2026.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td><td>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9.규제목표	(도입 목표)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 행위나 토지 형질변경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체계적인 물류·제조·연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함. (기대효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반시설(도로, 철도, 물류터미널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물류관련 제조,연구 시설 등의 배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행위허가의 대상) ① 국제물류진흥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1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 및 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

현 행	개 정 안
	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에서의 토석 채취 4.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준치하기로 결정 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 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행위허가의 대상 규제
	내용	- 행위허가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규제대안2	대안명	행위허가의 대상 비규제
	내용	- 행위허가의 대상을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규정 -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26.8.6 ~ 9.15 입법예고		

3. 규제목표

-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 행위나 토지 형질변경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체계적인 물류·제조·연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반시설(도로, 철도, 물류터미널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물류관련 제조,연구 시설 등의 배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기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재해복구·재난수습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과도하지 않고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재해복구·재난수습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유사입법례인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을 활용한 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는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를 규정 및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황까지 명시한 바,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26.4.7 제정, '27.4.8 시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하위법령 제정
 -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대집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종합결론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재해복구·재난수습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유사입법례인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활용한 바,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행위허가의 대상 규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행위허가의 대상 규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증 특례 방법 및 절차		
	2.규제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3.위임법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06~2026.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 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 연장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실증특례 신청·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9.규제목표	규제특례 신청자들이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신청절차를 명확화하여 행정상 예측가능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2.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3.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검증 방법

현 행	개 정 안
	4.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지역·기간·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5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 행	개 정 안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 · 방법 · 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 연장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실증특례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규제
	내용	- 실증특례의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규제대안2	대안명	실증특례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비규제
	내용	- 실증특례의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규정 -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26.8.6 ~ 9.15 입법예고		

3. 규제목표

- 규제특례 신청자들이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자들의 신청절차를 명확화하여 행정상 예측가능성을 제고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했으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7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차를 규정한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실증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7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차를 규정한바,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7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차를 규정한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26.4.7 제정, '27.4.8 시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하위법령 제정
 -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국토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의 실증특례 신청서 보완요구 및 규제대상자인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종합결론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연장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7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차를 규정하되,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실증특례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규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실증특례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규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제물류진흥지역 임시허가		
	2.규제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3.위임법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06~2026.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21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임시허가의 신청·연장신청·변경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임시허가 취소사유 및 절차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9.규제목표	규제특례 신청자들이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신청절차를 명확화하여 행정상 예측가능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소분류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 해당 물류사업등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3.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4.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기간·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현 행	개 정 안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해당 물류사업등의 혁신성·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현 행	개 정 안
	5. 해당 물류사업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류사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⑨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임시허가서 사본 5.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물류사업등의 시행 내용·방법·일정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 행	개 정 안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임시허가의 변경)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허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현 행	개 정 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임시허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시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21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임시허가 신청,변경,취소 등 절차 및 제출서류 규정
	내용	- 임시허가 신청 등 절차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규제대안2	대안명	임시허가 신청,변경,취소 등 절차 및 제출서류 비규제
	내용	- 임시허가 신청 등 절차 및 제출서류를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규정 -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26.8.6 ~ 9.15 입법예고		

3. 규제목표

- 규제특례 신청자들이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자들의 신청절차를 명확화하여 행정상 예측가능성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66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를 활용한 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의 규제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를 활용한 바, 과도한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변경 및 취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를 활용한 바, 과도한 절차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26.4.7 제정, '27.4.8 시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하위법령 제정
 -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국토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의 임시허가 신청 등 신청서 보완요구 및 규제대상자인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종합결론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신청·연장신청하거나 임시허가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했으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차를 규정한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임시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임시허가 신청,변경,취소 등 절차 및 제출서류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임시허가 신청, 변경, 취소 등 절차 및 제출서류 규정>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2.규제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3.위임법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9항 제21조제9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06~2026.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18조제9항 및 제21조제9항에 따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의 내용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책임보험의 보험금,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및 손해배상 절차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td><td>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	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	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및 규제특례에 따른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한 안전성 담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3.3		63.3						
		피규제자 이외	569.71		569.71						
		정성분석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기준 명시를 통한 신산업의 안전성 담보							
		주요내용	규제특례 대상 사업에 따른 인적, 물적 손해를 담보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명시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 제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미적용	63.3	연간균등순비용 7.99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책임보험) ① 실증특례를 받은 자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법 제18조제9항 본문 및 법 제21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물류사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20조제1항, 제5항(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의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제9항 본문 및 제21조제9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

현 행	개 정 안
	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9항 본문 및 법 제21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9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다음

현 행	개 정 안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물류사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9항 및 법 제21조제9항의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 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10항 단서 및 제21조제11항

현 행	개 정 안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18조제9항 및 제21조제9항에 따라,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의 내용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 규제
	내용	- 책임보험의 보험금 액수 및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 존재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하여, 수요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 없음
	내용	법에서 책임보험 보험금 액수 및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기준 및 절차를 두는 외 대안 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여, 신기술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하여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 재정적 부담

규제대안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26.8.6 ~ 9.15 입법예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물류 신기술·기반 시설·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3. 규제목표

-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및 규제특례에 따른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한 안전성 담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60조~제62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 규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3.3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 규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3		63.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569.71		569.71
총 합계		633.01		633.01
기업순비용		63.3	연간균등순비용	7.99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제60조 내지 제62조를 활용한 바, 국제물류 진흥지역 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제60조 내지 제62조를 활용한 바,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제60조 내지 제62조를 활용한 바, 국가 또는 자치 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26.4.7 제정, '27.4.8 시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하위법령 제정
 -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규제대상자인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 및 실제로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손해를 보전받은 소비자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한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를 활용한 바,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 규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3		63.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569.71		569.71
총 합계		633.01		633.01
기업순비용		63.3	연간균등순비용	7.99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규제특례 대상 사업에 따른 인적, 물적 손해를 담보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명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 규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
활동제 목	책임보험가입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63,301,74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책임보험료 실제 부담금액(원)X피규제자 수(1000000*8)
근거설명	책임보험료 실제 부담금액(1,000,000원) × 예상 규제특례 사업자 수(8개) 통상 책임보험료는 500~1,000만원 수준이며,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 수준(차액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예정,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참조) 규제특례를 신청받은 사업자 수는 5~10개 정도로 예측되며, 피규제자 수는 중간 수준인 8개로 가정

②정부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 목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569,715,70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정부지원금 x 피규제자 수(9000000*8)
근거설명	유사입법례인 스마트시티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보험 가입 시 일부(90%, 사업자 실부담 10%)를 지원함에 따라, 책임보험료(10,000,000) x 정부 지원율(90%) x 피규제자수(8개)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정부
활동제목	신사업에 대한 안전성 담보
편익항목	신사업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신사업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사업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일반 국민
활동제목	규제특례 신사업에 따른 피해 보전
편익항목	규제특례 신사업에 따른 피해 보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규제특례를 받은 신사업에 대한 책임보 험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보전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기준									
	2.규제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3.위임법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06~2026.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25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전담기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기준으로 시설잔비 및 인력 등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td><td>3개기관(예상)</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3개기관(예상)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3개기관(예상)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절차 및 제출 서류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들의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237.38		237.38						
		정성분석									
		주요내용	기존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비용 최소화 및 효율적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운영이 가능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 당없음				
----------------------	-------	--	--	--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 당없음 해당없음				
------------	---------------	--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 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장비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정보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정보플랫폼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시설장비 라. 정보플랫폼에 보관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정보플랫폼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현 행	개 정 안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25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전담기관 지정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규정
	내용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비규제
	내용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규정 - 전담기관 지정절차의 비공개로 인해 지정 등에 대한 투명성 문제 발생 우려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가능	없음
규제대안2	없음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저하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	'26.8.6 ~ 9.15 입법예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행정적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3. 규제목표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들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적 투명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정보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요구한 바,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타법사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237.38		237.38
총 합계		237.38		237.3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정보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만을 요구하며 유사입법례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된 지정기준을 활용한 바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들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된 지정절차 규정을 활용한 바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추가적 재정 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26.4.7 제정, '27.4.8 시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하위법령 제정
 -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운영실태 및 주기적인 관련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정보플랫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요구한 바,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237.38		237.38
총 합계		237.38		237.3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존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비용 최소화 및 효율적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운영이 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활동제목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선정
편익항목	전담기관 선정으로 인한 사이트 이용률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기존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NLIC)'을 운영중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정보플랫폼을 NLIC와 연계하여 NLIC의 이용률 제고

②정부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정보플랫폼 위탁예산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237,381,54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위탁예산(1년) (30000000)
근거설명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를 활용하여, 초기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시스템에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운영
편익항목	정보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기존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NLIC)를 활용하고, 해당 정보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운영 가능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일반국민
활동제 목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이용
편익항목	정보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내에서 지역 지정 및 입주기업 현황, 물류신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